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4
----------	-----

2018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8년 12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12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유치 협력에 합의하였고,
- 2018년 11월 남북 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함.
-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대회 서울·평

양 공동개최 유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대한체육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에 따라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련법령〉

##### 제6조(대회 유치 승인)

-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나. 주요내용

##### □ 대회 개요

- 2032년 제35회 서울-평양 하계올림픽대회는 2032년 7~8월 중 약 15일간 서울특별시와 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에서 33종목(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기준)을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회원국 약 2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 추진배경

- 그간 서울시는 남북 스포츠 교류 추진의 일환으로 경평축구의 부활과 전국체전 남북공동 개최 등 다양한 교류를 북측에 제안해왔으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18.9.19)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9월 평양 공동선언〉

-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 올림픽 유치 가능성 검토의견

-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 도시는 독일, 자카르타, 뉴델리, 브리즈번, 상하이 등이며

서울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평양과의 공동 개최가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여 경쟁력이 있고,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등 기존 시설의 활용과 타시도와의 협력으로 경제 올림픽 실현이 가능하며, 국제교류복합지구('21년~'28년) 추진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요소가 집중되고 교통·통신·숙박·관광 등의 중심지인 서울이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19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및 아시안 게임 남북공동 진출 등의 가시적 성과로 개최에 기회요인은 인정되나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은 총 23개 종목이 9개 경기장으로 분산되어 운영되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강원권 경기장으로 분산 운영됨.

### 〈1국가 2개 이상 도시 분산 운영 사례〉

#### ■ 1988 서울하계올림픽: 총 23개 종목 9개 종목경기장 분산 운영

- ▶ 파주(사이클), 수원(핸드볼), 고양(승마), 성남(하키,레슬링), 하남(조정,카누), 부산(요트, 축구), 광주(축구), 대구(축구), 대전(축구)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원권 경기장 분산 운영

- ▶ 평창(설상 및 슬라이딩), 강릉(빙상-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 정선(알파인 스키)

2019년 앞두고 있는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서울시 외 경기장을 이용할 예정인 바, 서울(남한)과 평양(북한) 두 국가 이상 분산 개최와 남한 내에서도 일부 경기(수영-인천, 육상-대구 등)는 분산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올림픽 유치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기장 확보에 경쟁력이 있는 상황은 아님.

### 〈2019년 전국체전 서울시계 외 경기장 이용 현황〉

#### ■ 서울시 외 경기 개최 종목 : 8개

- ▶ 수영(인천문학경기장), 하키(동해썬라이스하키장), 사격(청주종합사격장), 승마(인천드림파크), 자전거(양양경기장), 양궁 및 스쿼시(인천경기장), 골프(인천드림파크CC)

#### ■ 임시 경기장 등 개최 종목 : 3개

- ▶ 역도(송파우리금융 임시경기장), 볼링(동서울 등 분산개최), 럭비(육사력비장)

또한 서울과 평양의 분산 개최와 관련하여 「올림픽 헌장」 제34조에서 1국가 2개 이상 도시, 2국가 이상 등 분산 개최(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2국가 이상 분산 개최는 전례가 없으며 동 조항이 공동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보기에 모호함.

※ 공동개최(Co-hosting) 허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올림픽 현장〉

제34조 올림픽대회의 개최지, 개최 장소 및 경기장

모든 스포츠 경기 및 개/폐회식은 원칙상 올림픽대회 개최도시에서 열려야 한다. IOC 집행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 주로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개최도시 밖에 위치한 도시(여러 도시)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 이외의 국가에서 **예선 경기가 열리도록 조직한다.**
- 주로 지리적 위치 및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개최도시 밖에 위치한 도시(여러 도시)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 이외의 국가에서 **전체 종목, 세부종목 또는 세부경기가 열리도록 조직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은 우리 정부 일방만의 법률로 효력에 한계가 있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유치 협력을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도 국제법적 효력이 없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도로 및 철도 구축 등 북측의 사회 인프라 (SOC) 구축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총 3조 8,570억원 중 서울시는 1조 1,571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올림픽 개최 소요예산(안)〉

계(100%)	서울시(30%)	중앙정부(30%)	조직위원회(40%)
3조 8,570억원	1조 1,571억원	1조 1,571억원	1조 5,428억원

※ 소요내역 :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경기 운영 등

※ 조직위원회 : 광고료, 협찬 등으로 총당

※ 사회간접자본(SOC) 비용 제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북한 지원시 '대북 퍼주기'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올림픽 유치부터 대회 개최까지 10여년이 걸리는 장기프로젝트가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종목·경기장 분산 개최(개·폐회식 포함)에 대한 합의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다만 남북 정부 간 긴장완화 국면에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고 인적·기술적·언론 교류를 통해 평화담론 구축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대승적(大乘的) 견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개최신청은 서울시이지만 평양과의 공동개최를 준비하는 만큼 통일부·문체부 등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년월일 : 2018년 12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18.9.19.)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 나. 이후, 남북체육분과회담('18.11.2)에서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
- 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회개요(안)

- 대회명 : 2032년 제35회 서울-평양 하계올림픽대회
- 대회기간 : 2032년 7월~8월 중 / 약 15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
- 참가종목 : 33종목 (\*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기준)
- 참여국가 : IOC회원국 약 200여개 국가
- 참여인원 : 약 28,000명 (선수입원단 24,000 여명, 기자단 4,000 여명)
- 개최주기 : 4년 \* 2024년 파리(프랑스) / 2028년 LA(미국) 개최

### 3. 유치전략

#### 가. 남북 수도인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평화와 화합의 통일올림픽 실현

-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남·북한 수도가 같이하는 ‘한반도 통일올림픽’ 실현
-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서울 - 평양 동시 개·폐회식 개최

#### 나. 경기장 개·보수 등 기존 시설 활용으로 경제올림픽 실현 가능

-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시도와 경기장 분산 운영을 통해 경제 올림픽 실현
- 서울은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서 평양과 최단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SOC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통신·물류 비용 절감 가능

#### 다. 교통, 통신, 숙박, 관광 등 올림픽 개최지로 최적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MICE 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
-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가 서울에 집중되고 교통, 통신, 숙박, 관광 등 중심지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 국제경기대회는 투자 및 소비 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국가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유·무형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옴

#### 나. 한반도 평화 및 국민 화합 도모

-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남북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 평화 분위기 조성
-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



## 5. 소요예산(추정치)

○ 서울시 총 소요예산액 : 1조 1,571억원 추정

- 소요내역 :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경기 운영 등

계(100%)	서울시(30%)	중앙정부(30%)	조직위원회(40%)
3조 8,570억원	1조 1,571억원	1조 1,571억원	1조 5,428억원

※ 조직위원회 : 광고료, 협찬 등으로 충당

※ 사회간접자본(SOC) 비용 제외

## 6.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5812호]

####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종목별 국제체육행사 국내유치에 관한 규정」 [대한체육회 규정, 제정 2016.3.21]

#### 제5조(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의 제출)

① 국제체육대회를 국내에 유치코자 하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국제경기연맹(국제체육기구 등)의 유치신청서 제출 6개월 전에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체육회에 제출하되, 반드시 유치관련 회의록(해당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이와 상응하는 회의)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조희정 (☎ 2133-2679)